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54호
------	------

# 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복지국장
제출연월일	2023. 4. 11.

예산실장 심사필

# 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4호
----------	------

제출연월일 : 2023. 4. 11.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디지털정보과장

## 1. 개정이유

논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논산시 정보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정의
- 나. 정보화위원회 기능 개선 (안 제6조)
-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 심의  
⇒ 지역정보화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 심의
- 다.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추가 신설 (안 제7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2502(2023.3.9.)호]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정책과-9170(2023.3.20.)호]
- 3) 규제심사 : 대상 아님[예산실-2644(2023.3.3.)호]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3. 4. ~ 2023. 3. 23.(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6조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역정보화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으로 한다.

제7조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
5.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역정보화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디지털정보과장	최 동 학
안	정보정책팀장	안 승 찬
자	담 당 자	이 다 혜 (746-5182)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u>&lt;신설&gt;</u></p> <p>2. ~ 4. (생략)</p> <p>제6조(정보화위원회) <u>지역정보화 추진과</u>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정보화위원회) <u>지역정보화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추진</u>----- -----.</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u></p> <p><u>5.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u></p>

<신 설>

4.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 략)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생 략)

6.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7.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지역정보화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③ (현행과 같음)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추계 결과

○ 해당 없음

**3. 작성자**

디지털정보과장      최 동 학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